

#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19
----------	------

제출년월일 : 2009. 12.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 1.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중 택지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규정(안 제3조, 제3조의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09.10.20 ~ 11. 10 ) 결과 : 의견없음

##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연성폐기물”이란 전체 폐기물량 중 재활용 되는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인 유기성 폐기물을 뺀 폐기물을 말한다
5.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변동계수를 산출하여 산출연수로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6. “월 최대변동계수”란 월간 1일 평균처리량을 연간 일평균 처리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액의 산정)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 제4조제3항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소각시설의 경우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소각시설의 경우 :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단,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란 가연성폐기물(유기성폐기물제외)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여, 32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155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당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소각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에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량은 해당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폐기물 발생량
  2. 설치비용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등 공공성이 확보된 자료
-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산정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방법이 다를 경우 형식과 방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절차) ①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및 건물현황
  5. 폐기물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일 및 납부방법 등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의 준공전까지 납부금액을 3회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다. 다만, 사업 착공전에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계획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분할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④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u>&lt; 신 설 &gt;</u>	제2조(정의) ----- ----- 1~3 (현행과 같음) 4.“가연성폐기물”이란 전체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폐기물인 유기성폐기물을 뺀 폐기물을 말한다.
<u>&lt; 신 설 &gt;</u>	5.“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변동계수를 산출하여 산출연수로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u>&lt; 신 설 &gt;</u>	6.“월 최대변동계수”란 월간 1일 평균처리량을 연간 일평균 처리량으로 나눈 값은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분납)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준공 3월까지 4회 이내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액의 산정)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 제4조제3항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현 행	개 정 안
	<p>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p>
	<p>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p> <p>가. 소각시설의 경우 :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면적. 단,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란 가연성폐기물(유기성폐기물제외)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32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p>
	<p>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155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p>
	<p>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 당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p> <p>가.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p>

현 행	개 정 안
	<p>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p> <p><u>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u></p> <p><u>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제1항제1호에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량은 해당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폐기물 발생량</u></li> <li><u>2. 설치비용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등 공공성이 확보된 자료</u></li> </ol> <p><u>③ 제1항에 따른 비용산정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방법이 다른 경우 형식과 방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u>제3조의 2(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절차) ①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사업의 명칭</u></li> <li><u>2. 사업시행기간</u></li> <li><u>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u></li> <li><u>4. 건립예정 주택 및 건물현황</u></li> <li><u>5. 폐기물발생 예정량</u></li> <li><u>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일 및 납부방법 등</u></li> </ol>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u></p>

현 행	개 정 안
	<p>단지 및 택지개발의 준공전까지 납부금액을 3회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다. 다만, 사업 착공전에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계획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분할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p> <p>④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p>
<p>제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 ~ 4. (생략)          ② (생략)</p>	<p>제7조(기금의 용도) ①-----각  <u>호의 어느 하나-----</u>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 □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 제6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

### □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
- 가.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 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16]